

10년마다 수도물 수급관리 장기계획

앞으로 10년 단위마다 수도물 수급관리 장기계획이 수립되며 오는 2000년부터 모든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물 절약형 수도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 수도물 누수를 최대한 줄이며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개선되고 물 재사용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고 물절약과 물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6월 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위주로 펼쳐 왔던 물관리정책을 수요 관리로 바꾸고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하고 동시에 물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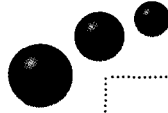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수도물 수급계획을 종합해 10년단위로 전국 수도물 수급관리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안에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물 절약형 수도기기 보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우선 연면적 1백m²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절수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오는 2000년부터는 절수형 수도기기를 현재의 변기에서 수도꼭지, 샤워기 등으로 확대하고 모든 건축물과 시설, 주택에 대해서도 절수형 수도기기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95년 기준으로 연간 16.2%(9억3백만t)에 달하는 누수율을 오는 2001년까지는 12%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와 함께 누수





탐사장비 및 인력 확보, 배관망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본요금+체증요금' 체로 돼 있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기본요금제는 폐지하고 수도관 굵기에 따라 정액요금체제로 변경하고 요금구간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 절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 물값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현재 생산원가의 80% 수준인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2월까지 90% 수준으로,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백%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쓰고 버린 물을 정화,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수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단위 개발사업 협의나 대규모 건축물 허가시 중수도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대형 공공건물에 대해 우선 도입 추진하되 점차적으로는 민간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배출부과금제도 강화와 총량규제 실시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산업폐수를 줄이고 폐수방류량 저감을 위해 폐수 10% 줄이기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물질약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물질약 실천수칙을 제정하고 절수형 수도기자재 전시회 개최, 시민단체와 연계한 물질약 실천운동 등을 통해 물질약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올해안에 수도권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수도권 환경보전 광역회의를 열고 수도권 전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건의함에 따라 올해안에 우선 수도권 전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6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수도권 지자체는 올해안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시일안에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 환경부는 지자체의 대기오염 저감 실천계획이 목표 기간안에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늘려주는 등 재정·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 지역은 좁은 면적에 비해 인구와 자동차, 산업시설 등 각종 공해요인이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지자체별로 지역적인 대기오염 관리로는 더 이상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일단 서울과 서울 위성도시,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 한해 시범적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정해 이를 실시한후 효과가 좋을 경우 전국의 다른 광역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됨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실천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대한 관련 법률이 지난해 9월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해 온 결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만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호의적인 반

음을 보여 연내 지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이달부터 8월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여름철 스모그 현상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오존 오염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6월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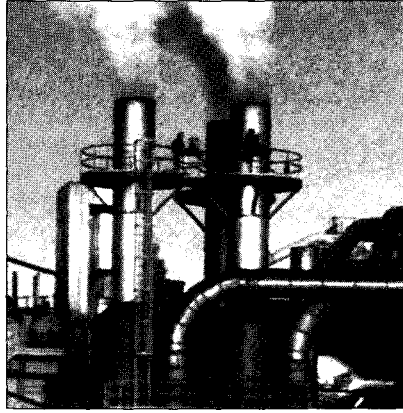
단속기준 매연농도는 95년이전 생산된 차량은 40%이상, 96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30%이상이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업장별 방문단속과 함께 오염다량배출차량인 대형경유차와 승합차의 노상에서의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최소 3일 이상의 사용정지처분과 최고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된 차량은 정비확인서를 받아 당국에 제출해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6월 한달동안 자동차 업체별로 직영정비사업소와 일반정비업소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병행한다며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정비소를 찾아 빠른 시일안에 무료점검을 받도록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7만1천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1만1천여대는 개선명령, 5백41대는 사용정지처분을 각각 내렸으며 적발차량에 대해 1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에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 선진국으로 분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화석에너지 사용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일대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 6월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지난 3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UNFCCC) 후속의정서 제정을 위한 실무회의(AGBM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 멕시코, 브라질에 대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선진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오는 8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7차 실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지난 3월 실무회의 후 이같은 의사 타진을 우리 정부에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92년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94년 3월 발효됐으나 개도국 지위를 받아 의무 온실가스감축 대상인 선진국과는 달리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에 대한 통계를 작성, 제출하고 국가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데 그쳤으며 작년 12월 OECD에 가입하면서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양해를 받았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중인 기후변화협약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다소 진통은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후속의정서 제정관련회의에서 201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는 기후변화협약이 발족됐던 92년 당시 OECD에 가입된 24개국이다.

기후변화협약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저감 및 흡수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정책을 채택하고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할 의무를 지니는 등 특별한무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EU는 오는 12월 도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2010년까지 90년온실가스배출량의 15%를 줄일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대상으로 지정되고 도쿄회의에서 구체적인 201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소수치가 제시될 경우 가뜩이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

또 기후변화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선진국들이 무역규제 등 통상압력을 가할 우려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총 배출량(90년기준)은 6천9백27만8천t으로 이 가운데 화석에너지 연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94.1%인 6천5백17만9천t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발전부문과 수송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 세계 16위에서 2000년에 9위로 진입한 뒤 2010년에는 6위, 203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발전 및 수송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낼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다 줄 것으로 우려되며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오는 2005년부터 군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한 후 재만을 매립할 수 있으며 직접 매립은 금지된다.

또 2001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대규모 폐수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유기성 오니(汚泥, 찌꺼기)와 페타이어, 폐가구, 가전제품은 직접 매립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모든 시지역(군지역 제외)은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해 발효과정을 거쳐 사료나 퇴비로 만들고 사료나 퇴비가 힘든 쓰레기는 소각한 후 재만 매립을 허용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업체를 7월 1일부터 현행 하루 급식인원 2천명이상 급식소와 객석면적 6백60㎡이상 음식점에서 1일급식인원 1백명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백㎡이상 음식점, 시장·도매센터, 관광숙박업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기준도 현행 재활용 또는 탈수, 미생물에 의한 감량방식에서 내달 1일부터 분쇄·파쇄에 의한 탈수나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쓰레기 수분함유량을 75% 이하로 줄이거나 혹은 발효·발효건조를 통해 퇴비·사료·소멸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 금지대상을 오는 2001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일일 2천t 이상 배출하는 1종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니로 적용하고 아울러 페타이어와 폐가구, 폐가전제품도 직매립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2005년부터는 축산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하루 7백t이상 배출하는 2종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모든 유기성 찌꺼기에 대해서도 직접 매립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전국 11개 소각장에 대해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쳐 연소실 출구온도를 현재 섭씨 8백도에서 8백50도로 높이고 소각잔재물 감량기준도 15%에서 10%로 줄여 소각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능검사 대상시설을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6백kg에서 2백kg으로 확대하고 매년 다이옥신 농도를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로의 경우 2003년 6월말까지 권고기준을 0.1ng(나노그램 : 10억분의 1g)으로 정하고 2003년 7월부터는 이를 규제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기설로의 경우 2002년 6월말까지 권고기준을 0.5ng으로 정하고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말까지는 규제기준을 0.5ng으로, 2005년 7월부터는 0.1ng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중소규모로 건설

환경부는 현재 대규모 위주로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중소규모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달되기 전에 상당량이 누수되는 등 부작용이 많고 하수처리효율이 떨어져 앞으로는 중소규모 위주로 건설키로 했다고 지난 6월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주변 환경을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수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토록 해 현재 79개인 하수종말처리장수를 오는 2005년까지 3백15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하수가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르면서 지하수가 상당량 유입되고 또 하수관 불량률이 30%에 달해 하수가 지하수와 섞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현행 체계로서는 하수처리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79개로 하수처리율은 50%선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 김종천수도정책과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현재와 같이 하루 수십만t을 처리하는 대규모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라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규모 위주로 건설해 하수처리효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